

의안번호	2216324
의 퇴 인	박홍배 의원
회 답 일	2026.3.24.
추계번호	26B0402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안전기술개발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6,000만원, 2031년 5,2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억 6,900만원(연평균 7,4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107	—	—	—	—	107	21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42	42	42	42	42	210	42
산업안전기술개발위원회 (안 제6조)	10	10	10	10	10	52	10
추가재정소요	160	52	52	52	52	369	74

주: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연구용역의 추진 여부, 시행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산업안전기술개발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산업안전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산업안전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분야 2. 산업안전기술의 현황 및 중점기술 개발 전략 3.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안전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5. 기술성과의 실증·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산업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4	안 제6조(산업안전기술개발위원회)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기술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장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7조(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1. 고위험공정, 신산업분야 및 사업장 대상 안전기술의 연구개발 2. 재해예방을 위한 인공지능·센서·빅데이터 기반 예측 기술 개발 3. 산업안전 관련 장비·시스템의 성능검증 및 표준화 4.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확산 지원	재량규정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실용화 연구를 포함하며, 기술의 상용화와 보급을 촉진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에 따라 관리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6	안 제8조(안전데이터의 통합관리 및 활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안전데이터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데이터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안전데이터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제2항)	재량·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정보 및 기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비식별화·익명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7	안 제9조(민간참여 및 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구기관·대학(이들의 부속 연구소 등을 포함한다)·기업 등이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담금 또는 매칭펀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술이전, 사업화,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8	안 제10조(산업안전기술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산업안전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성과확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절차·업무범위 및 관리·감독, 지정취소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10	안 제12조(국립산업안전과학원의 설립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기술 및 안전관리 기준을 과학적으로 정립·검증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산업안전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둔다(제1항)	의무규정
		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2항) 1. 산업안전 관련 데이터·정보의 수집·분석 및 국가 통계·지표의 작성·관리 2. 산업안전기술 및 안전관리 기준·지침·평가기준의 정립을 위한 연구·개발 3. 산업안전 관련 기술기준·시험방법·인증기준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및 표준화 4. 그 밖에 산업안전기술 및 안전관리 기준의 정립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의무규정
		정부는 과학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과학원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11	안 제13조(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정부는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산업재해예방기금 중 일정 비율을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정부는 민간 출연금,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지원금, 그 밖의 수입금을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재원 운용 및 사용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정부의 책무)	—	• 미대상 — 제정안은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한 선언적·명시적 규정이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 추계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3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4	안 제6조(산업안전기술개발위원회)		
5	안 제7조(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위험공정, 신산업분야 및 사업장 대상 안전기술의 연구개발, 재해예방을 위한 인공지능·센서·빅데이터 기반 예측기술 개발 등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내용과 추진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6	안 제8조(안전데이터의 통합관리 및 활용)	×	• 미첨부(제1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안전데이터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제정안에서 안전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에 관한 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미대상(제2항)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데이터의 통합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안전데이터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미첨부(제3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및 기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비식별화·익명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인정보 및 기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비식별화·익명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의 발생 여부 및 발생 정도 등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7	안 제9조(민간참여 및 협력)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연구기관·대학(이들의 부속 연구소 등을 포함)·기업 등이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제정안은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담금 또는 매칭펀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연구기관·대학(이들의 부속 연구소 등을 포함)·기업 등에 대한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 참여 여부 및 이에 대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에 따라 결정되나,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조달 재원의 성격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의 발생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나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8	안 제10조(산업안전기술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산업안전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재정적 지원 규모와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되나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예산의 범위로 유동적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9	안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	• 미대상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성과확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0	안 제12조(국립 산업안전과학원의 설립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안전기술 및 안전관리 기준을 과학적으로 정립·검증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산업안전과학원을 두도록 규정하면서 정부로 하여금 과학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립산업안전과학원의 설립 규모와 이에 대한 지원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예산의 범위로 유동적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11	안 제13조(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산업재해예방기금과 민간 출연금,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지원금, 그 밖의 수입금을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나,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재원별 지원 비율도 유동적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안전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추계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하며, 연구용역 비용은 유사 연구용역의 평균값을 준용하여 추계

－ 추계기간 동안 용역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며, 추계기간 동안 1회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 (유사사례 1)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종합계획

- － (주요내용) 대구광역시의 재난안전산업 진흥계획 수립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을 기초로 하여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5년 주기 법정 계획으로 이에 대한 기초 연구
- －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 － (수행기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 (용역예산) 7,788만원(2024년)

* (유사사례 2) 재난안전산업 진흥정책 연구

- － (주요내용) 제1차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
- － (발주기관) 행정안전부
- － (수행기관) (주)에이치앤컨설팅
- － (용역예산) 1억 3,701만원(2023년)

[표 2]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107	—	—	—	—	107

자료: 고용노동부

나.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하며, 연구용역 비용은 2024년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의 평균값(4,200만원)을 준용하여 추계하며, 추계기간 동안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표 3]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42	42	42	42	42	210

주: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다. 산업안전기술개발위원회(안 제6조)

- 제정안은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기술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제정안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장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곤란
 - 다만, 본 추계서는 산업안전 보건업무와 관련되는 중요정책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사례를 토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에 대해 검토
 - (민간위원 수) 13명
 - (단가) 안전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¹⁾

1)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5.p.222.)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횟수)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되어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표 4] 산업안전기술개발위원회(안 제6조) 구성·운영 비용추계: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13	13	13	13	13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회의참석사례금(C, 만원/명·회)	20	20	20	20	20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10	10	10	10	10	52

주: 1.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산업안전기술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하고, 산업안전기술개발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억 6,9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5]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107	—	—	—	—	107	21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42	42	42	42	42	210	42
산업안전기술개발위원회 (안 제6조)	10	10	10	10	10	52	10
추가재정소요	160	52	52	52	52	369	74

주: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연구용역의 추진 여부, 시행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산업안전기술개발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 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산업안전기술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